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
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5. 12. .
발 의 자	김상조 의원 외 9명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상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 연월일 2015. 12.

발 의 자 김상조, 권기만, 김복자
안장환, 안주찬, 양진오
윤영철, 정근수, 정하영
한성희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
2014.10.31.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
~ 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
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
조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
“2,016,000원”을 “2,092,000원”으로 조정(안 제3조)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『지방자치법』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
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은 매월 “2,016,000원”을 “2,092,000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월정수당지급) ①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<u>2,016,000원</u> 을 지급한다. ② (생략)	제3조(월정수당지급) ①----- ----- ----- <u>2,092,000원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

[지방자치법]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-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>
-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지방자치법시행령]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-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>
 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- ②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